

전문재활치료산정기준

국립재활원 김현경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준알아보기

← → ↻ 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인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글자 + - ENG

병원·약국 진료비 의료정보 제도·정책 국민참여 정보공개 알림 기관소개 전체메뉴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돕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니다.

우리 동네 가까이에 있는 병원·약국 어디일까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	암, 수술 등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일까요	검사수술 등 자주 묻는 진료항목 알아보기
내가 처방받은 약값 얼마일까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최저·최고 비교하기	비급여 진료비 제대로 나온 건지 궁금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알아보기 (고사·행정해석 등)

고객센터
1644-2000
고객센터 상담 | 09:00 ~ 18:00(월~금)

국민의 제언·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알려드리는 소식은 만나보세요

<https://biz.hira.or.kr/index.do?sso=ok>

심사기준종합서비스, 청구방법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5)

제 7장 이학요법료

- 제 1절 기본물리치료료
- 제 2절 단순재활치료료
- 제 3절 전문재활치료료
- 제 4절 기타이학요법료

전문재활치료: 목록

1. 중추신경계발달장애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2.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herapy
3.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Activity of Daily Living Training
5.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ES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6. 연하장애재활치료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7. 호흡재활치료(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8.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9.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
10. 풀치료(1일당) Pool therapy
1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12. 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 할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 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를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 하
며,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토록 함.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 1)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일 1회만 인정함.
- 2)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만 1일 1회 인정하나,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함.
- 3) Vegetative state(식물인간 상태 등)는 발병기간에 관계없이 사례별로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만 인정함.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 나. 발병 후 적정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적절한 치료(전문재활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를 받은 경우 약 3개월 정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기능 회복 및 호전여부 등에 따라 상기 가.항과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재활기능치료 중 사130-가 매트 및 이동치료와 사130-나 보행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실시 시 1종만 인정함.
- 라.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지기능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1-2종목만 실시하는 등 1일당 수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주 2회 인정함.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 마. 작업치료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123-가 단순작업치료, 사123-나 복합작업치료, 사123-다 특수작업치료 중 한 항목을 선택 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일에 다른(단순작업치료 + 특수작업치료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1종만 인정함.
- 바. 사-141 연하장애재활치료는 발병 후 객관적 소견 없이 6개월 정도 인정하며 그 이후는 객관적 소견(연하장애평가검사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 사.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기능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이므로 발병 후 2년 이내는 1일 2회 인정가능하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력이나, 기능적인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발병 후 6개월까지는 1일 2회 인정하고 6개월 이후에는 1일 1회 인정하며, 2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전문재활치료: 인정기준

아.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3개월마다 실시한 연하장애 평가검사(비디오조영 연하 검사 또는 내시경 연하검사)에서 Penetration-Aspiration Scale(PAS)가 5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발병 또는 수술 후 6개월까지는 PAS 3 이상인 경우 인정함),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이 경과한 이 후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환자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함.

- * K-MBI : Korean Modified Barthel Index
- * MRS : Modified Rankin Scale
- * FIM :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 * DRS : Disability Rating Scale(2012.7.1일 진료분부터 적용)

1.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2	MM105	가.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28.59	17,670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	치 료 실 에 서 mat, stall bar, balance training system physiofeedback, moterized parallel bar, mobile weight bearing device, two side compact staircase등의 장비와 치료용 공, wedge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반사억제패턴, 촉진법 및 고유체위감각과 촉각 자극법 등의 테크닉으로 여러 상황을 재현하면서 정상적 감각-운동 패턴을 유도한다.	

1.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

- 국내 전문교육과정의 현황, 동 요법 실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실시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 (신생아 보이타치료) 사122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사122 '주' 항의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에 해당되므로 사122(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2-13호, '02.4.1 시행)

2.재활기능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130	제 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 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			
	MM301	가. 매트 및 이동치료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 훈련 등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85.62	14,350
	MM302	나. 보행치료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7.42	13,710

2.재활기능치료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매트 및 이동치료	1. 침상생활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 자세 훈련을 위한 경사대 훈련을 시행한다. 2. 매트 내에서의 구르기, 누워서 일어나기, 좌위 균형유지 훈련, 앉은 자세에서의 이동훈련, 기기 훈련, 무릎으로 서기 훈련, 앉아서 일어나기 훈련을 시행한다. 3. 의자차와 매트사이의 이동 훈련을 시행한다. 4. 지지대 잡고 무릎서기와 서기 훈련을 시행한다.	
보행치료	1. 평행봉내에서 서서 중심 잡기 훈련부터 시작하여 중심 이동하기, 평행봉잡고 걷기, 평행봉 내에서 지팡이, 보행기 등의 보행기구를 이용한 걷기 훈련을 실시한다. 2. 운동치료실 내의 평지 보행 훈련, 협조 운동 훈련, 계단 오르내리기 훈련, 앉고 서기 훈련을 실시한다. 3.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 훈련, 부분 체중 부하기를 이용한 훈련을 실시한다. 4. 협조 운동의 향상을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걷는 훈련, 균형계를 이용한 균형 훈련을 실시한다.	

2.재활기능치료

- **(보행훈련, 체중탈부하 보행훈련, 특수보행훈련, 견인보행기)**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30-나. 보행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트레드밀 운동치료[트레드밀 장비를 이용하여 보행훈련 실시],컴퓨터 균형평가훈련[보행치료의 초기단계])** 사130-나. 보행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3.작업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3	MM111	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 정	53.30	4,120
	MM112	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 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 정	104.50	8,080
	MM113	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 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	151.28	11,690

3.작업치료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단순작업치료	여러 가지 도구나 기계(손기능강화 훈련도구, 인지 및 지각훈련도구, 시지각훈련도구 등)를 이용하여 주로 상지의 근력강화, 미세동작훈련, 관절가동범위운동, 감각 자극, 인지훈련 등의 방법으로 반복된 교육을 해서 정상적 기능을 유도한다.	치료사 1명당 환자 2명이상, 10분이상
복합작업치료		치료사 1명당 환자 1명, 10분~ 30분
특수작업치료		치료사 1명당 환자 1명, 30분이상

- (작업요법[종이접기], 고무찰흙손운동) 사123-가. 단순작업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감각통합치료 Sensory Integration Therapy) 해당 작업치료의 범주에 포함함.
(고시 제2008-40호, '08.61 시행)
- (인지재활치료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 사123 해당 작업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9-200호, 09'11.1 시행)

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4	MM114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훈련을 최소 2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51.13	11,680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일상생활 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에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침상 활동(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균형 잡고 앉아 있기 등), 자기 돌보기 활동(양치질, 세면, 용변, 목욕, 음식 먹기, 옷 입고 벗기 등), 의자차 사용(의자차를 타고 내리는 일 포함),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보행, 주방 및 가사 노동 동작 등 일상적인 모든 기본 생활동작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을 치료자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1일당)

- (일상생활동작 모의훈련 및 교육[ADL Simulation Therapy], 복합 의수족 기능훈련, 단순 의수족 기능훈련, 특수 의수족 기능훈련)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A.D.L Device[의식주를 도와주는 기구, 손에 끼우는 스푼 등])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2세이하의 뇌성마비, 발달지연아동

2세 이하의 뇌성마비환자 및 중증 발달 지연아에게 실시한 사123 작업치료 및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의 급여여부) 뇌성마비에 의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작업요법이 필요하며 특히 2세이하의 유아에서도 Bobath의 신경발달학적 치료방법이나 감각통합 치료방법 등 여러종류의 작업치료를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인정되므로 뇌성마비로 확진된 경우에는 연령 제한없이 인정하며 뇌성마비로 확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세 이하의 유아에게 중증 이상 발달지연이 있어 실시한 작업요법은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5.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131	MZ008	1.중추신경계질환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	191.27	14,790

6.연하장애재활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141	MZ141	1.중추신경계질환, 식도 또는 기관의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1인의 작업치료사가 1:1로 30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2회만 산정	182.63	14,120

6. 연하장애 재활치료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연하장애 재활치료	1. 구강단계 치료 : 음식물이 입술, 혀, 연구개 등의 기능 저하로 인해 구강에서 인두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실시함. 저하된 구강 기능을 촉진하는 구강운동(oral motor exercise)을 실시한다. 2. 인두단계 치료 1) 간접 치료 : 음식물의 기도 흡인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음식물 없이 실시하는 삼킴 치료법임. 멘델슨 삼키기기법(Mendelsohn Maneuver), 냉촉각 자극법(Termal tactile stimulation), 기도폐쇄법(supraglottic swallow), 과장되게 삼키기(Effortful swallow), 성문폐쇄 연습(vocal cord adduction exercise) 등을 실시한다. 2) 직접 치료 : 안전한 음식물을 이용하여 삼킴 기능 향상을 돕는 치료법임. MBS(Modified Barium Study) 이후 음식물의 기도 흡인 가능성 낮은 농도의 음식물(예, 물 종류는 어려우나 죽 농도의 음식물은 가능한 경우)을 파악하여 그 음식물을 이용하여 삼킴 기능 향상을 돕는 방법임. 3. 치료 내용은 안전한 음식물의 종류 및 양과 개인에 따른 안전한 삼킴 자세에 관한 교육도 포함된다. 그 외, 보호자, 환자 및 간병인 교육도 치료 시간 중에 함께 실시한다.	업무위임: 언어 혹은 작업치료사

7.호흡재활치료(1일당)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129	MM290	유발성 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83.67	6,470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호흡재활 치료	1. 이완운동 : 호흡근육 긴장은 빈호흡을 유발하므로 마음의 안정과 호흡근육의 이완을 위해 전신근육의 이완요법을 시행한다. 2. 호흡 재훈련 : 횡격막호흡과 입술 튀기기 호흡(pursed lip breathing) 등의 방법을 교육하고 시행한다. 3. 기도 분비물의 제거 : 흉곽 타진(chest percussion), 체위성 배액 요법(postural drainage)을 사용하여 분비물의 배출을 유도한다. 4. 흡기 저항 운동 : 점차적인 흡기 운동을 시킨다. 5. 호흡근의 이완 및 휴식을 유도한다.	업무위임여부 :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에게 업무위임 가능

7.호흡재활치료(1일당)

▪(단순체위배액운동, 복잡체위배액운동, 호흡운동, 흉곽팽창운동[Chest Wall Expansion Exercise], 호흡생체되먹이기훈련) 유발성 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 치료를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사129 호흡재활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 호, '01.1.1 시행)

8.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6	MM151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2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85.84	14,370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근력이 좋거나(도수근력검사상 good등급 이상) 경직이 너무 강한 경우(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IV)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척추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양하지마비의 기립 및 보행훈련

나.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에게 족하수의 방지, 수근관절이나 완관절 등의 근력 개선(고시 제2019-166호, '19.8.1. 시행)

▪(EMG Trigger EMS)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8.기능적 전기자극치료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1. 환자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근육의 적절하게 선택한다. 2.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파라스텝 Parastep 1 system 등)를 밧데리와 연결하여 전선을 연결한다. 3. 각각의 근육에 전극을 붙이고 스위치를 켜고 버튼을 눌러 환자의 반응을 유도한다. 4. 근육 수축의 정도와 강도, 통증 유무 등을 관찰하면서 치료기를 조작하여 전기의 강도와 파형을 조절 한다. 5. 보행이나 동작을 관찰하면서 각 근육에 부착된 전극를 통한 전기 흐름의 시간과 각 전극간 on/off 간격을 조절한다. 6. 기능적전기자극을 시행 후 근육의 피로도 등 환자의 신체적 변화를 진찰한다.	업무위임여부 : 의사의 감독하에 물리/작업치료사 업무위임가능

9.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5	MM120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이완 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226.09	17,480

9.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신경인성방광훈련 치료	1.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방광 환자들에게 4시간 이상의 방광의 과대 팽창을 방지하고 한편 요 실금을 방지하기 위해 정시배뇨훈련(timed voiding), 방광자극훈련(bladder stimulation, Valsalva's and Crede's maneuvers, anal stretch voiding) 등을 통해 배뇨를 유도하며, 간헐적 도뇨를 시행한다. 2. 신경인성방광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훈련방법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전문의, 전공의 및 간호사가 매일 1명의 환자 당 3-5회 시행하게 된다.	업무위임여부 :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 업무위임 가능

10. 풀치료(1일당)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1	MM047	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주: 뇌졸중, 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잡기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	245.93	19,010
	MM048	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주: 근육, 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 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	385.71	29,820

10. 풀치료(1일당)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보행풀치료	walking pool에 하지 또는 체간의 일부를 담그고 체중 부하운동을 통하여 affected site에 체중부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부력을 통해 체중 부하의 부담을 줄이며 보행 연습을 할 수 있다.	
전신풀치료	전신을 Therapeutic pool에 담근 후 필요한 관절에 대한 관절가동범위운동을 하여 관절가동범위를 늘리고 경직이 심한 근육에 대해서는 근육이완운동을 실시하며 근력이 약화된 근육에 대한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한다.	

11.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7	MM13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	77.92	6,020
	MM132	동시에 2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122.73점을 산정	122.73	9,490

11.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사용약제: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동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음.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다. 실시횟수 :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라. 다른 물리치료요법을 병행 실시하는 경우 : 사101 표층열치료와 사106 단순운동치료는 근막동 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동통제거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사102 심층열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입원 진료시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외래 진료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병행 실시된 물리치료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12.재활사회사업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 -128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2. (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3. (나),(다)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중 2회 이내만 산정		
	MM141	(가)개인력 조사	198.42	15,340
	MM142	(나)사회사업상담	121.62	9,400
	MM143	(디)가정방문	415.96	32,150

12.재활사회사업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개인력조사	1. 환자 또는 가족면담을 통한 사정을 한다. 2. 자원체계 조사 및 정보수집을 한다. 1) 의료적 상황 평가- 진단명, 의료적문제, 수술여부, 치료경과, 치료계획, 인지기능 등 2) 심리사회적 평가 ① 인구학적 특성 - 연령, 학력, 종교, 직업, 결혼상태 등 ② 심리적상태 ③ 가족관계 ④ 경제력 ⑤ 물리적환경(주거환경 및 가옥구조) ⑥ 클라이언트 개인(육구, 대처능력, 사회복지문제) 3. 개입목표 및 개입활동 계획 수립한다. 4. 기록 및 Answer 작성을 한다.	

12.재활사회사업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사회사업상담	1. 개별면담, 가족면담을 한다. 1) 개별면담 ○ 환자상담/가족상담 - 퇴원에 대한 불안감 다루기 - 퇴원에 방해되는 요인확인 - need파악 - 퇴원이후 생활계획 하기 2) 가족면담 ① 환자 및 가족이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수용하도록 한다. ② 입원기간 중 가족들이 환자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역할을 하고 협조하도록 한다. ③ 퇴원에 필요한 심리적 환경적 보호계획을 가지고 퇴원상황에 대해 상담을 한다. 2. 이용 가능한 자원체계 소개 및 연결을 한다. 1) 장애인제도 및 보험에 관한 정보 2) 지역사회 자원 소개 및 연결 3) 장애인 단체안내 3. 직업재활 및 교육재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4. 경제력 평가 및 경제적 지원활동을 한다. 5. 퇴원계획을 한다.	

12. 재활 사회사업

행위정의	실시방법	비고
가정방문	1. 클라이언트집 방문을 한다. 1) 퇴원후 치료적 환경조성 ① Home modification을 위한 방문 ② 이용가능한 기관안내 및 연결과 시설입소를 위한 방문 ○ 지역사회복지관, 단기보호시설, 지역보건소 등 ○ 수용시설(인가·비인가시설) 등 2) 퇴원 이후 생활을 위한 준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동사무소 방문 ② 외부 후원단체 방문 ○ 가옥구조 촬영 ○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개인력 조사 및 사회 사업 상담) 2. 지역사회자원체계 관련 방문을 한다.	시술장소 : 환자의 집, 사회복지시 설, 동사무소 등

일반사항

-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고시 제2010-31호, '10.6.1. 시행)

일반사항

-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에 분류된 이학요법료 중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동일환자에 대하여 2가지 이상 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거나를 불문하고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고시 제2018-281호, '19.1.1. 시행)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고시 제2011-10호, '11.2.1. 시행)
- **(척추결핵에 실시한 물리치료 인정여부)** 척추결핵으로 인한 동통, 마비, 관절운동제한, 근력약화 등의 증세호전을 위한 물리치료는 결핵약제의 복용과 관계없이 인정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일반사항

- (새로운 장비<저주파 치료기, 미세전류 치료기, 합성전자기파 치료기, 자기치료기, 견인기구, 운동기구, 레이저치료기 등>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료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08.1.14시행)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1.3항에 “각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 장비, 기구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분류항목 중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산정하여야 하며,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임.
 2.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장비별 수가체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체제이며, 수입 또는 국내 생산제품일지라도 소정의 수입 또는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비(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참고:기타 이학요법료(1)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36	MM360	간헐적호흡치료 (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Intermittent(Positive or Negative)Pressure Breathing Treatment	525.23	40,600
사-43	MM430	고빈도 흉벽진동요법(1일당) High Frequency Chest Wall Oscillation	166.00	12,830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MM440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Rehabilitation Exercise for pulmonary Disease	608.70	47,050
	MM441	호흡근부전 재활치료 Pulmonary Rehabilitation for Respiratory Muscle Dysfunction	1580.68	122,190

참고:기타 이학요법료(2)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42	MM420	신경인성 장훈련치료(1일당) Neurogenic Bowel Training 주: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장환자에게 손가락자극, 손가락을 이용한 분변제거, 복부마사지 등의 방법으로 배변반사를 자극하고 배변을 유도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직장분변제거술 및 직장마사지는 소점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177.54	13,720

참고:기타 이학요법료(3)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45	심장재활			
	MM451	가. 심장재활교육 Cardiac Rehabilitation Education	268.38	20,750
	MM452	나. 심장재활평가 Cardiac Rehabilitation Evaluation	1,029.19	79,560
	MM453	다. 심장재활치료 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517.29	39,990

참고:기타 이학요법료(4)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병원금액
사-46	MM460	기립경사훈련(1일당) Tilt Training Treatment	372.41	28,790
서-32	MX0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145.21	11,220

감사합니다.